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청구요건 심사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4월 25일, 평창군의회의장 제출
- 회부일자: 2025년 5월 1일 회부
- 상정일자: 제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5년 5월 7일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의회사무과장)

가. 제안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된 「평창군 군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청구요건을 심의하여 청구 수리 여부의 결정을 구함.

나. 주요내용

- 청구 개요 및 추진경위 - [붙임2] 심의안 참조
- 청구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각하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 [붙임 1]

###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 5. 토론 요지: 「없음」

###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청구요건 심사의 건」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청구요건 심사의 건」 1부.

-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청구요건 심사의 건 -

## 검 토 보 고 서

### 1. 조례안 개요

#### 가. 제안이유

- 본 안건은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주민조례 청구(청구인, 김용근)에 대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청구요건(수리 또는 각하 여부)의 심사를 요청함.

#### 나. 주민조례청구 추진경과

- 조례명 :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자 : 김용근(평창군 대관령면 갈골길 312-3)
- 청구일 : 2024. 8. 30.
- 청구취지 : 풍력발전시설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및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평창군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고원관광도시인 평창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기 위함.
-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 : 2024. 9. 23.
- 청구인 명부작성 기한 : 2024. 9. 24. ~ 2024. 12. 23.(3개월)
- 청구인명부 제출 : 2024. 12. 20.
  - 연서주민 수 : 651명
  - 청구인명부 공표 : 24. 12. 24./평창군의회 공고 제2024-2호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4. 12. 24. ~ 1. 3.(10일간)/이의신청 없음
  - 청구인명부 유효성 확인 : 25. 1. 3. ~ 4. 2.(3개월)

- 유효성 확인결과 : **미충족**(필요연서수: 373명/유효연서수: 357명)
- 청구인명부 보정요청: 25. 3. 25.
- 청구인명부 보정기간: 25. 3. 26. ~ 4. 4.(10일간)
- 청구인명부 보정 제출기한: 25. 4. 9.
- 청구인명부 보정 결과: **기한 내 미제출**

○ 청구인명부 유효성 검증 최종 결과 보고 : 25. 4. 11.

## 2.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 의장은 조례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sup>1)</sup> 및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0 조의<sup>2)</sup>에 따라 「평창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 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를 심사하기 위한 사항임.
- 이번 위원회 심사는 절차상 주민청구조례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2024년 8월 30일 자로 접수된 「평창군 군계획조례 일부개

---

1)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2) 제30조의 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조례청구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음.

구분	관계 법령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여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주민조례청구 요건 적합 여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
청구인명부 제출기한 준수 여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0조

### 가.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여부(법 제4조<sup>3)</sup>) : 해당사항 없음

- 본 청구안의 주요내용은 풍력발전시설에 관한 이격거리 등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 주민조례청구 각 호의 규정 중 청구취지와 일부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이 있으나, 법 제4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이미 존재하는 법령의 내용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을 일컫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법령은 법률,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의미하고, 구체적이고 특정된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주민청구조례의 입법취지와 배치된 내용을 규정하여 입법체계를 잘못 표현한 것이 법령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또한 풍력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은 화순군의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 조례 규정, 상주시의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정 질의에 대하

3)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여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면서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법제처의 의견제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별표1의2 제2호 가목(3)에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규정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민조례청구안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법 제4조 2호 내지 4호에도 해당되지 않아 청구 제외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나. 주민조례청구 요건 적합 여부(법 제5조<sup>4)</sup> 및 조례 제3조<sup>5)</sup>) : 부적합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0일 평창군수가 공표한 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총수는 37,201명이며 이 중 필요 서명인 수는 1/100인 373명임.

(단위 : 명)

요건총족 서명인	제출 서명인	무효연서 서명인	유효연서 서명인	검토결과
373*	651	294	357	미 충족

\* 청구권자 총수(37,201명)의 1/100 이상( '24. 1. 10. 평창군수 공표)

4)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6. 인구 5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5)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평창군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로 한다.

- 본 청구 조례안의 유효 연서 주민 수는 제출된 651명 중 무효 서명인 수 294명을 제외한 357명(18세 이상 주민)인 바, 조례에서 정한 청구권자 서명 기준 373명보다 16명 미달하여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주민조례 청구권자 서명인 수의 요건을 미충족 하였음.
- 구체적인 무효서명 사유를 보면, 전체 연서수의 45%인 294명으로 필수기재사항 누락 171명(58.1%), 중복서명 45명(15.3%), 조회불가 78명(26.5%) 순으로 나타남.

### < 서명무효 세부내역 >

(단위 : 명)

구분	제출 연서수	유효 연서수	무효 연서수	서명무효 세부내역				
				필수기재 사항※ 누락	중복서명	조회불가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 수리 전 서명	선거권 결격자
서명수	651	357	294	171	45	78	0	0

※ 필수기재사항

- 주소누락(세부주소, 아파트 동, 호수 포함), 생년월일 일부누락 등

※ 조회불가 등

- 관외거주(주민등록 불일치), 이름과 생년월일 불일치, 확인불가 등

- 이에 따라 필요 서명수 미충족으로 2025년 3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지 10 일간 보정 요청하여 2025년 4월 9일까지 제출을 요청하였음.

## 다. 청구인명부 제출기간 준수(법 제10조 제1항<sup>6)</sup>) : 부적합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대표자는 법 제8조제1항<sup>7)</sup>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날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를 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출기한일	제출일	검토결과
24. 12. 30.	24. 12. 20.	적 합

- 청구인명부는 서명요청기간 시작일로부터 87일 뒤인 24년 12월 20일에 제출되었으므로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에 명부를 제출하였으나, 법 제11조제4항<sup>8)</sup>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하여 10일의 기간을 두어 보정하게 하였음.

제출기한일	제출일	검토결과
25. 4. 9.	미제출	부 적 합

- 보정한 청구인명부는 보정요청기간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명부 제출기한 준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6)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제8조(서명요청 기간 등) ①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공표가 있는 날부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8) 제11조(이의신청 등)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2. 시·군 및 자치구: 10일 이상

### 3. 종합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용근이 청구한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리 각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임.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한 청구요건은, 첫째, 법 제4조에 의한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여부, 둘째, 법 제5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였는지 여부, 셋째,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청구인명부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본 조례안에 대한 주민조례청구는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요건 중 법 제5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의 연대서명 여부와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청구인명부 제출 기한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안건은 법 제12조 제1항 및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붙임】

- (붙임 1)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등
- (붙임 2) 주민조례청구 업무 처리 절차
- (붙임 3) 2024년 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총수 공표
- (붙임 4) 주민조례청구 청구인 명부 유효성 검증 최종결과 보고

## 불임1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평창군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로 한다.
-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 제30조의 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불임2 주민조례청구 업무 처리 절차

### □ 주민조례청구제도 개요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連署)로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 업무 처리 흐름도

순번	절 차	기한 및 내용	비고
1	청구인 명부제출	2024. 12. 20. 제출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한 내 미제출 시 각하</li><li>○ 대표자 측에 향후 절차 안내</li></ul>
2	공표	서명부 제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024. 12. 24.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대표자 성명·주소 청구취지, 연서수, 열람기간·장소 등을 공표</li></ul>
	서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2024. 12. 24. ~ 2025. 1. 3.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의회, 군청, 읍면 민원실에 사본 열람</li></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이의신청:</b> 서명부 열람 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서명부 공표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명부에 관한 사항만)</li><li>○ <b>이의신청 심사결정</b>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 결정</li><li>○ 보정: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자체 서명 유·무효 확인 시 청구에 필요한 연서수가 모자를 경우 10일 이내에 보정하도록 통지(다시 순번 1~3 절차 진행)</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조례특별위원회의 심의</b><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li></ul></li><li>○ <b>서명확인:</b> 관외, 중복서명, 서명 누락, 생년월일 및 상세주소 미기재, 서명일 오기재 및 누락, 식별불가 등</li></ul>
4	수리 및 각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이의신청이 있을 시</b><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연서수 미충족<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보정된 청구인 명부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li></ul></li><li>2) 연서수 충족<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li></ul></li></ol></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조례특별위원회의 심의</b><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여부</li><li>- 주민조례청구 적합 여부</li><li>- 청구인명부 기일 내 제출 여부</li></ul></li><li>○ <b>심의자료 관련 의사팀 초안작성</b></li><li>○ 각하 시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함.</li></ul>

		<input type="radio"/> <u>이의신청이 없을 시</u> 1) 연서수 미충족 - 보정된 청구인 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b>3개월 이내</b> 2) 연서수 충족 -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b>3개월 이내</b>	
5	<b>발의</b>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b>30일 이내</b>	<input type="radio"/> 원안발의 <input type="radio"/> 간담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집행부, 대표자, 반대 측 등) <input type="radio"/> 대표자 측에 진행상황 안내
6	<b>입법예고</b>	<b>5일 이상</b>	
7	<b>의결</b>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된 날부터 <b>1년 이내</b>	<input type="radio"/> <b>1년 연장 가능</b> , 원안·수정가결 및 부결 포함)

## □ 주민조례청구 요건

- 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충족하는 자  
**\*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 청구권자 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
  - 청구권자 총수의 1/100 이상의 연서 주민수 필요
-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불임3

2024년 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총수 공표

평창군 공고 제2024 - 15호

## 2024년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조례의 제정·개폐, 주민조례발안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공표

### 1. 관련법령

- 가. 「주민투표법」 제5조 및 제9조
- 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
- 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2. 위 관련법령에 따라 2024년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조례의 제정·개폐, 주민조례발안 주민조례 등의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4년 1월 5일

평 창 군 수

##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 및 청구 연서 주민수

(단위: 명)

18세 이상 주민 수(A)			선거권이 없는자(B)	연서대상 주민총수 (A-B)	청구 연서 주민수
계	주민등록	3년 경과 등록 외국인			
37,247	37,184	63	46	37,201	373

※ 주민등록 : 2023년 12월 31일 기준, 평창군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

단,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 외국인 : 2023년 12월 31일 기준, 평창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 주민조례발안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단위: 명)

18세 이상 주민 수(A)			선거권이 없는자(B)	청구권자 총수 (A-B)
계	주민등록	3년 경과 등록 외국인		
37,247	37,184	63	46	37,201

※ 주민등록 : 2023년 12월 31일 기준, 평창군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

단,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 외국인 : 2023년 12월 31일 기준, 평창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 붙임4 주민조례청구 청구인 명부 유효성 검증 최종결과 보고

등록번호	의회사무과 - 1601
등록일자	2025. 4. 11.
결재일자	2025. 4. 11
공개구분	파기전 공개

주무관	의사팀장	의 회사무과장	의장
김재석	이충우	김민경	양진상
수석전문위원			김정숙
주무관		김리연	
협조자			

## 주민조례청구 보정 요청 건 관련 결과보고



평창군의회

# 주민조례청구 보정 요청 건 관련 결과보고

## 1 청구개요

- 청구일자: 2024. 8. 30.(금)
- 대표자: 김용근(수임자 9명)
- 청구대상: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청구내용: 풍력발전시설에 관한 이격거리 등 규정 신설

## 2 보정결과

- 보정사유: 유효서명인 수가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 미달

(단위: 명)

필요서명인 수	제출서명인 수	유효서명인 수	부족서명인 수
373	651	357	16

- 보정요청: 2025. 3. 25.(화)
- 보정기간: 2025. 3. 26.(수) ~ 4. 4.(금), 10일간
- 제출기한: 2025. 4. 9.(수)까지 ※ 보정된 서명부 제출 기한
- 보정방법: 무효처리 서명 보정 / 당초 서명하지 않은 주민의 새로운 서명
- 결 과: 기한 내 미제출

## 3 검토사항

-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검토의견

- 보정청구인명부 제출 기한 내 미제출로 「주민조례별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각하 사유 해당 ※ 제304회 임시회 시 수리·각하 결정
- 단, 각하 시 사전에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함.

붙임 1. 청구조례(안)

- 진행경과 및 향후계획
- 관련법규

##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3(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풍력발전시설은 소음 및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구(舊) 국도(2차선 이상 포장도로), 농어촌도로(농도는 제외한다)]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2.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직선거리 내 해당 주민 모두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정온시설(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0미터 이내
4. 관광지 및 축사관련시설의 경우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0미터 이내
5. 산에 입지하는 경우 경관을 고려하여 4헥타르당 1기 이하일 것
6. 허가 시 그 밖의 소음·진동·경관·산림훼손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 풍력발전 시설 입지에 따른 관계 법령 검토 의견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 것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불일2 진행경과 및 향후계획

- 주민조례청구(안) 조례 접수: 2024. 8. 30.
- 주민조례청구 대표자(김용근) 등록: 2024. 9. 5.
-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공표: 2024. 9. 23.
- 서명요청기간: 2024. 9. 24. ~ 2024. 12. 23.
  - \*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서명
- 청구인명부 제출: 2024. 12. 20.
- 청구인명부 공표: 2024. 12. 24.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서명부 이의신청: 2024. 12. 24. ~ 2025. 1. 3.
  - \* 이의신청 없음
- 청구인명부 유·무효 확인 기간: 2025. 1. 3. ~ 4. 1. ※ 3개월
- 청구인명부 유·무효 검증(2024. 12. 20. 제출 기준)
  - 서명 수: 651명(수기서명 640명, 전자서명 11명)
  - 필요서명수: 373명
  - 유효서명수: 357명
  - 검증결과: 미충족 ※ 16명 미달
- 필요 서명수 미충족으로 인한 보정 요청: 2025. 3. 25.
  - 보정기간: 2025. 3. 26.(수) ~ 4. 4.(금), 10일간
  - 제출기한: 2025. 4. 9.(수)까지 ※ 기한 내 미제출
- 의견제출통지: 2025. 4월 중
  -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에게 각하와 관련된 의견제출 기회 부여
- 수리·각하 결정: 2025. 5월, 제304회 임시회
- 수리·각하 결정 사항 통보: 2025. 5월 예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민조례청구 청구요건 심사의 건

의안 번호	423
----------	-----

제출연월일: 2025년 4월 25일  
제출자: 평창군의회의장

### 1.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된 「평창군 군계획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평창군 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청구요건을 심의하여 청구 수리 여부의 결정을 구함.

### 2. 개요 및 추진경위

#### □ 개요

가) 청구조례명: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청구인의 대표자: 김용근(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갈골길 312-3)

다) 청구내용: 풍력발전시설에 관한 이격거리 등 규정 신설

라) 청구취지: 풍력발전시설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및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평창군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고원관광도시인 평창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기 위함.

□ 추진경위

가) 주민조례청구(안) 접수: 2024. 8. 30.

나)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등록: 2024. 9. 5.

다)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공표: 2024. 9. 23.

라) 서명요청기간: 2024. 9. 24. ~ 2024. 12. 23. / 3개월간

※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서명

※ 제출기한: 2024. 12. 30.까지(서명요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

마) 청구인명부 제출: 2024. 12. 20.

※ 제출서명인수: 651명(수기서명 640명, 전자서명 11명)

바) 청구인명부 공표: 2024. 12. 24.

사)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2024. 12. 24. ~ 2025. 1. 3.

※ 이의신청 없음

아) 청구인명부 유무효 확인 기간: 2025. 1. 3. ~ 4. 1.

자) 청구인명부 유·무효 검증(2024. 12. 20. 제출 기준)

- 제출 서명인수: 651명(수기서명 640명, 전자서명 11명)

- 필요 서명인수: 373명

- 유효 서명인수: 357명

차) 필요 서명수 미충족으로 인한 보정 요청: 2025. 3. 25.

- 보정기간: 2025. 3. 26. ~ 4. 4. / 10일간

- 제출기한: 2025. 4. 9.까지

- 보정결과: 기한 내 미제출

카) 사전통지: 대표자에게 의견제출 통지(2025. 4. 23.) / 제출기한: 2025. 5. 2.까지

※ 의견제출 없음

### 3. 검토사항

□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해당 여부(법 제4조): 해당없음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유효 서명인수 충족 여부(법 제5조): 미충족(유효 서명인수 부족)

- 필요 서명인수: 373명

※ 평창군 공고 제2024-15호(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주민총수의 1/100 이상)

- 유효 서명인수: 357명 ※ 필요 서명인수 부족(16명)

(단위 : 명)

제출 서명수	유효 서명수	무효 서명수						
		계	필수기재 사항누락	증복서명	조회불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 수리전 서명	선거권 결격자	비고
651	357	294	171	45	78	0	0	

※ 필수기재사항: 주소 누락(세부주소, 아파트 동, 호수 포함), 생년월일 일부 누락 등

※ 조회불가: 관외거주, 이름과 생년월일 불일치, 확인불가 등

□ 청구인명부 기일 내 제출 여부(법 제10조제1항): 미충족

- 1차 청구인명부

청구인명부 제출 기한	청구인명부 제출일
2024. 12. 30.	2024. 12. 20.

- 2차 청구인명부 ※ 필요 서명인수 부족으로 인한 보정

보정청구인명부 제출 기한	보정청구인명부 제출일
2025. 4. 9.	미제출

#### 4. 참고사항

- 가) 청구조례안(평창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1
- 나) 2024년 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총수 공표 ..... 붙임2
- 다) 청구인 대표자증명서(서명기간 표시) ..... 붙임3
- 라) 청구인명부 보정 요청(서명기간 표시) ..... 붙임4
- 마) 관련법규 ..... 붙임5
- 바) 청구인명부 유·무효 확인 세부사항 ..... 별첨1
- 사) 청구인명부 사본 ..... 별첨2

## 불임 1

##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풍력발전시설은 소음 및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구(舊) 국도(2차로 이상 포장도로), 농어촌도로(농도는 제외한다)]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2.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직선거리 내 해당 주민 모두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정온시설(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0미터 이내
4. 관광지 및 축사관련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0미터 이내
5. 산에 입지하는 경우 경관을 고려하여 4헥타르당 1기 이하일 것
6. 허가 시 그 밖의 소음·진동·경관·산림훼손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 풍력발전시설 입지에 따른 관계 법령 검토 의견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불임 2

## 2024년 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총수 공표

평창군 공고 제2024 - 15호

### 2024년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조례의 제정·개폐, 주민조례발안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공표

#### 1. 관련법령

- 가. 「주민투표법」 제5조 및 제9조
- 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
- 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2. 위 관련법령에 따라 2024년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조례의 제정·개폐, 주민조례발안 주민조례 등의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4년 1월 5일

### 평 창 군 수

#### □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 및 청구 연서 주민수

(단위: 명)

18세 이상 주민 수(A)			선거권이 없는자(B)	연서대상 주민총수 (A-B)	청구 연서 주민수
■	주민등록	3년 경과 등록 외국인			
37,247	37,184	63	46	37,201	373

※ 주민등록 : 2023년 12월 31일 기준, 평창군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  
단,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 외국인 : 2023년 12월 31일 기준, 평창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 □ 주민조례발안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단위: 명)

18세 이상 주민 수(A)			선거권이 없는자(B)	청구권자 총수 (A-B)
■	주민등록	3년 경과 등록 외국인		
37,247	37,184	63	46	37,201

※ 주민등록 : 2023년 12월 31일 기준, 평창군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  
단,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 외국인 : 2023년 12월 31일 기준, 평창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관련공문: 행정담당관-357(2024. 01. 03.)

### 붙임 3

### 청구인 대표자증명서(서명기간 표시)

■ 평창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성명	김용근	생년월일	1961.04.18.
주소 (거소·체류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갈골길 312-3 (전화번호 : 010-9650-6042)		
청구명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평창군 군계획 ) 조례의 [ ]제정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정 [ ]폐지 청구		
서명오청기간	2024년 9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9월 23일

평창군의회 의장

직인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관련공문: 의회사무과-3742(2024. 09. 23.)

## 붙임 4

## 청구인명부 보정 요청(서명기간 표시)

“군민에게 행복주는 밀을직한 평창군의회”



### 평창군의회

행복하는 부처부대,  
행복하는 평창군의회

수신 김용근(청구인 대표) 귀하

(경유)

제록 주민조례(개정) 청구인 명부 보정 요청

2024. 12. 20.(금) 제출하신 「평창군 군계획 조례」의 일부개정을 요구하는 주민조례 청구인 명부 검토결과, 유효한 서명인 수가 조례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에 미달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정을 요구하오니, 기한 내 보정된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명인수: 651명

나. 유효 서명인수: 357명

※ 필요 연수 주민수는 373명으로 16명 부족

다. 추가필요 서명인수: 16명

라. 보정기간: 2025. 3. 26.(수) ~ 2025. 4. 4.(금), (10일간)

마. 보정방법

- 무효처리된 서명을 보정
- 당초 서명하지 않은 주민의 새로운 서명

바. 제출기한: 2025. 4. 9.(수)까지

사. 제출장소: 평창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아. 기타사항: 유·무효 확인은 보정된 서명부 제출일 기준

붙임 서명부 세부내역 1부(별송). 끝.

관련공문: 의회사무과-1316(2025. 03. 25.)

## 붙임 5

## 관련법규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 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 ·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 · 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 · 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 · 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6. 인구 5만 미만의 시 · 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②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이 지난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공포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

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평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평창군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로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